

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1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12월 11일) 상정
- 제14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12월 11일) 원안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 윤순중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2007. 5. 11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그 밖의 용어나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없	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“원안의결”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81호
의결 년월일	2007. 12. 21 (제140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1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 개정(법률 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44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운
영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운영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호다목 및 제2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「의료급여법」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의료급여법」에
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제24조 규정”를 “제24조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독립채산제에 의하여”를 “독립채산제에 따라”로 하고,
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제5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관계법
령 및 조례·규칙 등에 의한”을 “관계 법령 및 조례·규칙 등에 따른”
으로 한다.

제11조제1호 중 “관계법령 및 제10조의 규정”을 “관계 법령 및 제10
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관계공무원”을 “관계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·제35조·제38조 및 제39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제144조에 따라----- ----- 운영에 필요한----- -----.</p>
<p>제4조(업무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가.·나. (생략)</p> <p>다. 기타 노인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</p> <p>2. 노인전문요양원: 치매·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에 대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·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</p> <p>3. (생략)</p> <p>가.~다. (생략)</p>	<p>제4조(업무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그 밖에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 ----- 그 밖에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~다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이용대상) (생략)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기타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</p>	<p>제5조(이용대상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그 밖에----- -----</p>
<p>제6조(비용) ①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수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의료급여법」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.</p>	<p>제6조(비용) ① ----- -----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퇴소) (생략)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전염병 또는 <u>기타</u>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8조(운영위원회)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<u>제24조의 규정</u>에 따라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.</p> <p>제9조(위탁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<u>독립채산제에 의하여</u>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제1항의 규정</u>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 한다.</p> <p>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①~④ (생략)</p> <p>⑤ 수탁자는 시설·장비, <u>기타</u> 재산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퇴소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<u>그 밖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운영위원회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제24조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9조(위탁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독립채산제에 따라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<u>제1항에 따라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u>그 밖의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, 운영권 양도·대여·증여·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⑥ 수탁자는 <u>관계법령 및 조례·규칙 등에 의한</u>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 <p>제11조(위·수탁의 해지) (생략)</p> <p>1. 수탁자가 <u>관계법령 및 제10조의 규정</u>에 위반하였을 경우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</p> <p>제13조(지도·감독 등)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지도·감독하고,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<u>관계공무원</u>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노인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</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⑥ -----<u>관계 법령 및 조례·규칙 등에 따른</u>----- -----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위·수탁의 해지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<u>관계 법령 및 제10조</u>-----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 <p>제13조(지도·감독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관계 공무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4조(시행규칙) -----<u>시행</u>----- -----<u>에 필요한</u>----- -----.</p>